

(앞쪽)
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	폐수배출시설 설치 [] 허가증 [] 신고증명서		
제	호			
① 사 업 장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
③ 대 표 자				
④ 사업장소재지		(전화번호:)		
⑤ 사업종류		(분류번호)	⑥ 종 류	종
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			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	
⑨ 폐 수 배 출 요 인 명 세				
원 료 명		사 용 량	생 산 제 품 명	생 산 량
허가 또는 신고 사항	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: 따로 붙임			
	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			
	폐수배출시설명	폐수배출량	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	폐수처리방법
	⑫ 폐수처리계통도: 따로 붙임			
	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			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(사업장 부지면적 m ²)		[] 해당 [] 해당없음 ※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.		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[]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[]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

< 변경사항 >

[illegible]

< 처분사항 >

[illegible]

< 참고사항 >

[illegible]